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1. 2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등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(안 제1조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(안 제2조)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(안 제3조)

라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 (안 제4조)

마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 (안 제5조)

바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기타

- 1) 일괄개정조례안: 붙임
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53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,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를 “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법 제104조제2항”을 “법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법 제41조제3항”을 “법 제4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”을 “법 제49조제4항”으로, “법 제41조

제5항”을 “법 제4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5항”을 “법 제4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영 제46조”를 “영 제49조”로, “영 제47조”를 “영 제50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116조”를 “법 제126조 내지 1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

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를 “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마포구(이하 “구””를 “마포구의회(이하 “마포구의회”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구”를 “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마포구”를 “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5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.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. 다만, 본의회가 특 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----- -- 법 제131조 및 제134조--- 3. ----- 법 제163조----- ----- 4. 법 제117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.

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구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
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----- 법 제13조

----- 법 제49조
제3항-----
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49조제4항-----

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
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
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
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
할 수 있다.

제9조(고발의 절차) ① 의회는 법
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
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
장의 명의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
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의 제척
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
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영 제47
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
는 법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의회 회의 규칙」(이하 “회의
규칙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
징계할 수 있다.

----- 법 제49
조제5항-----
-----.

제9조(고발의 절차) ① ---- 법
제49조제5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징계) -----
----- 영 제49조-----

----- 영 제50조

-----.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또는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1 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2. (생략) 3.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(생략) 5.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(신설 '98.11.27, 개정 '04.9.25, 2007.10.5.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126조 내지 129조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163조----- ----- -----</p>

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·② (생략)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마포구의회(이하 “마포구의회”-----</p>
<p>제3조(월정수당) ① ~ ③ (생략) ④ 월정수당은 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마포구의회 -----</p>
<p>제8조(준용) 이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마포구의회 ----- -----</p>

5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